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노동시장조사과장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2명(7급 2명)을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증진과 산업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고용노동부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7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12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또는 5급 8명) 중 정원 8명(4급 또는 5급 8명)은 그 존속기한 도래 후인 2024년 1월 1일부터 각각 6급 7명, 6급 8명으로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2명(5급 22명)은 2024년 1월 1일자 종전의 직급(6급 22명)으로 환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중 고용노동부 정원 1명(6급 1명)과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93명(5급 34명, 8급 87명, 9급 72명), 노동위원회 정원 4명(8급 4

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고용노동부 정원 1명(4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상호 이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2. 6. 10.)·시행(2023. 6. 11.)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 등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3명(7급 3명)”을 “2명(7급 2명)”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장애인고용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을 “장애인고용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2023년 6월 29일”을 “2025년 6월 29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의정부지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지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강릉지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원주지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태백지청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영월출장소의 위치의 관할구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강원지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릉지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별표 2 제2호의 원주지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태백지청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별표 2 제2호의 영월출장소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란 중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를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47”을 “6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0”을 “639”로 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을 “1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을 “35”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을 “20”으로 하고, 행정주사 “59”를 “6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9”를 “37”로 하고,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다음에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를 신설하며,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사무관 5명 및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을 “1”로 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을 “41”로 하며,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을 “3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9”를 “118”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8”을 “187”로 하고, 행정주사 “819”를 “849”로 하며,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노동부령 제27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12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행정사무관 8명으로 본다.”를 삭제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중 2. 제28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6월 29일까지) “2023년 6월 29일”을 “2025년 6월 29일”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고용노동부령 제29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존속, 이 규칙 시행으로”를 “이 규칙 시행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6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6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2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1의2를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 정원 1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 별표 11의 정원 193명(행정사무관 30명,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명, 행정서기 87명, 행정서기보 68명, 직업상담서기보 4명),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서기 4

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별표 11의 정원 193명(행정주사 34명, 행정주사보 87명, 행정서기 68명, 직업상담서기 4명), 별표 1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 4명),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별표 6의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64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40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8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59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5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9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 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별표 6의3]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646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청년정책 담당(6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2
일반직 계	639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0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
임기제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7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0
행정사무관	138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7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	6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32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4
통계사무관	4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59
행정주사 · 통계주사 · 직업상담주사 · 공업주사 · 보건 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7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직업상담주사	1
전산주사	10
통계주사	4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	2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2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55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 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7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 는 전산주사보	5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
직업상담주사보	2
전산주사보	4
통계주사보	6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2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 · 통계서기 · 직업상담서기 또는 전산서기	3
전산서기	2
행정서기 또는 사서서기	1
운전서기	2
시설연구관	1

기록연구사	1
운전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1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전문경력관 다군(비상계획 담당)	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7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7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6,736
일반직 계	6,736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
행정사무관	11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8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 는 전산사무관	18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819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65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	239

주사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1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 · 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52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
행정주사보	1,014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40
직업상담주사보	36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28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8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89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497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2
직업상담서기	229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204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70
직업상담서기보	411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기록연구사	6
운전서기보	47
사무운영서기보	29
방호서기보	31

비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종전의 노동부령 제270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정원 중 환원된 정원을 제외한 이 표의 정원 12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명, 행정주사 8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으며, 별표 6의 정원 중 <u>3명(7급 3명)</u> 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u>2명(7급 2명)</u> ----- -----.
②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애인고용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화학사고예방과장, 고양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북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장애인 <u>고용과장</u> ----- ----- ----- ----- -----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④ ~ ⑪ (생략)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중전의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직렬이 변경되는 별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

-----.

제28조(한시정원)

③ -----

--- 2025년 6월 29일 ---

-----.

④ ~ ⑪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

<u>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u>은 202 <u>2년 12월 28일까지</u> 존속하며, <u>이 규칙 시행으로</u> 증원되는 별 표 6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명)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 ----- -----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47</u>	<u>646</u>	-1
·	·	·	
·	·	·	
일반직 계	<u>640</u>	<u>639</u>	-1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10</u>	<u>11</u>	+1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6</u>	<u>35</u>	-1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7</u>	<u>20</u>	-7
·	·	·	
·	·	·	
행정주사	<u>59</u>	<u>66</u>	+7
·	·	·	
·	·	·	

행정주사보 · 통계주사보 · 직업상담주사보 · 공 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	<u>39</u>	<u>37</u>	-2
·	·	·	
·	·	·	
<u>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36	6,736	
일반직 계	6,736	6,736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6</u>	<u>1</u>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36</u>	<u>41</u>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38</u>	<u>30</u>	-8
·	·	·	
·	·	·	
행정사무관	<u>119</u>	<u>118</u>	-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08</u>	<u>187</u>	-21
·	·	·	
·	·	·	
행정주사	<u>819</u>	<u>849</u>	+30
·	·	·	
·	·	·	